

의안번호	제 55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5일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전원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5
----------	-----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5일

발의자 : 전원표,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연철흙, 황규철,
박상돈 의원

1. 제안이유

충청북도 공공시설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도록 하여 충청북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다.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라. 공공시설 건립비용의 공개범위를 규정(안 제4조)
- 마.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용 공개에 관한 상을 규정(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다. 협의 : 균형건설국 도로과

라. 조례안 예고 : 2020.9.28. ~ 2020. 10. 4.(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소속 행정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 라. 도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시·군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가. 공공청사
 - 나.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하수도 시설
 -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
 - 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 사. 그 밖에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 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 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

해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때에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이 조례안 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어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